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 ·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제554호 2016. 01. 25.(수) 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7년 01월 06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01월 10일

다. **상정일자** : 2017년 01월 18일

-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**원안가결**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발굴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교류·협력 및 국가 정책 대응 필요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 치 : 충청북도 내

○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

○ 수탁기관 :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○ 사 업 비 : 5.1억원 정도(인건비 2.7, 운영비 등 2.4) ※ 도비 100%

○ 주요사무

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사업

-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

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, 협력사업

-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대응 사업

- 그 밖의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)

가.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
○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4조¹⁾에 따라 충청북도 국토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.

^{1) 「}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14조(운영의 위탁)

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.

○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²)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.

나. 종합의견

- 수도권정비계획법(1983. 7. 1. 시행)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2004. 4. 1. 시행) 제정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으나, 현재까지도 인구·경제·교육 등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.
 ※ 전체인구 5,107만명 중 49.5%, GRDP 1,485억원 중 48.8%, 전국 20대학의 80%, 의료기관 51%, 정부투자기관 89%,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중 122석
- 또한, 20년이 넘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경제력의 지방분산, 행정과 재정의 분권, 교육과 문화의 분권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, 중앙집권적 형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,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, 지역전략산업의 육성,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, 국가정책 대응, 민간교류협력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행정, 정치권 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보다 전략적이고 구체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성 또한 극대화 할 수있도록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.

^{2) 「}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~ ② (생 략)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(생 략)

- 다만,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, 공정성, 투명성,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,
- 또한, 수탁기관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성과 및 경영에 관한 합리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 1부.

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・운영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554호

제출연월일: 2017년 1월 6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가.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발굴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교류·협력 및 국가 정책 대응 필요
- 나.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」관련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및 14조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제4조에 따라 "충청북도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"을 수랍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 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(2017년 ~ 2020년)

나. 위 치 : 충청북도 내

다. 공간규모 : 센터운영 가능면적(센터장 및 직원 2명 근무)

라. 위 탁 비 : 5.1억원 정도(3년간, 인건비 2.7, 운영비 등 2.4)

마 수탁기관 :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

바. 위탁사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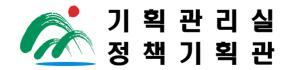
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사업
-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
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, 협력사업
-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대응 사업
- 그 밖의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 • 운영 민간위탁계획 : 붙임

나. 관계 법령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계획

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센터설 치 · 유 영 민 가 위 탁 계 획

- ◇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정・ 공포('16. 12. 16) 에 따라
- ◇ 사무의 민간 위탁을 위해 의회 사전 동의 필요
- ◇ 의회 동의 후 센터 설치 및 민간 위탁 추진
 - ※ (근거)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

1 센터 설치 개요

- O 설치 근거 : 「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3조
- O 설치 장소 : 충청북도 내
- 설치 규모 : 센터 운영 가능 면적(센터장 및 직원 2명 근무)
- O 설치 방법 : 외부 건물 임차 또는 도 소유 건물 활용
- 편성예산액 : 370백만원

O 기 능

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
- 도민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
-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, 협력 사업
-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
-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2 민간 위탁 운영

- O 추진 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
 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
 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 -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지원조례 제14조
- O 위탁 방법: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대상자 선정
- O 위탁 대상기관 공모 : 도 홈페이지 공고
 - 공모대상 : 도내지역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
- O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
 - 인 원 : 6명(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- · 당연직 2명 : 기획관리실장(위원장), 행정국장
 - · 위촉직 4명 :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 관계전문가
 - * 간사 : 정책기획관
 - 심의·선정
 - · 심의사항 :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 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 - · 선정방식 : 서면평가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 - 선정 결과 : 도 홈페이지 공고
- O 위탁 예산액: 연간 170백만원

3 향후 계획

O 민간위탁 의회 동의(정책복지위원회) : '17. 1월.

○ 센터 건물 선정 검토보고 : '17. 2월.

○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 구성: '17. 2월.

O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'17. 3월.

O 센터 건물 임대차 계약 : '17. 3월.

O 센터 내부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: '17. 3월.

O 수탁 운영 대상자 모집 공고 : '17. 3월.

O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: '17. 3월.

O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: '17. 3월.

O 위·수탁 협약 체결(공증) : '17. 3월.

O 민간위탁 운영 : '17. 4월.

(위탁기간 2017. 4. ~ 2020. 3.)

* 센터 설치 장소 결정에 따라 일정 변경 추진

< 참 고 >

□ 관련규정

- O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13조, 제14조
 - 도지사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(제13조)
 -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
 - 위탁기간 3년
 - 위탁기간 연장(재 위탁) 시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재계약
 -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.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O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17조
 -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
- O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
 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<u>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</u> <u>충청북도의회</u> <u>동의를 받아야 함</u>
- O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
 - 수탁기관 선정 시 <u>공개모집을 원칙</u>으로 하고, 「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
 -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 도모를 위해

「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 구성